

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2. 11. 27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2.11.19. 이 필 레 의원 외 3명
- 나. 회부일자 : 2012.11.22.
- 다. 상정일자 : 제17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(2012.11.27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이 필 레 의원

가. 제안이유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보험료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의 지역가입자로서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

등으로 함(안 제3조)

- 2)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명단을 지사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함(안 제4조)
- 3)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)
- 4)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하고,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함(안 제8조)

3. 검토보고 (김건재 전문위원)

- 0 본 조례안의 제정은 생활여건이 사실상 어려움에도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서 정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충족시키지 못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음.
- 0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의 지역가입자로서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,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, 한부모가족 세대 등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,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장은 매월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음.
- 0 안 제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월별 1만원 이하 부과 대상 저소득주민은 65세 이상 노인세대 808명, 장애인 세대 378명, 한부모세대 65명 등 총 1,251세대로 연간 소요예산액은 약 70,000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, 소요

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에 이미 계산하였음.

0 본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「지방자치법」 제1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조례제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회시된바 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